

제 747 호
1980. 1. 19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정상천
편집 : 문화공보관 심재섭
전화 7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- ◎ 조 계
 - 제 1392 호 :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및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..... 3
- ◎ 규 칙
 - 제 1839 호 : 서울특별시입시직외사규칙개정규칙..... 4
- ◎ 고 시
 - 제 11 호 : 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..... 5
 - 제 12 호 : 도시계획발사업시행인가신청기관지정..... 6
 - 제 13 호 : 도시계획마관지구변경결정..... 6
 - 제 14 호 : 도시계획마관지구변경및결정..... 7
 - 제 15 호 : 도시계획사업(전기공급설비)시행허가..... 8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민이 도시의 소식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16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.....	8
제 17 호 :	도시계획사업 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 결정및시설 (공원, 도로) 결정.....	9
제 18 호 :	도시계획사업 (공용의청사) 실시계획인가.....	9
제 19 호 :	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) 결정및지적승인.....	10

◎ 공 고

제 12 호 :	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시행기간지정에따른공람공고.....	11
제 15 호 :	도시계획사업 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 실시계획변경공람공고.....	11
제 16 호 :	도시계획사업 (시장) 완료공고.....	12
제 17 호 :	도시계획사업 (시장) 완료공고.....	13
제 18 호 :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완료공고.....	13
제 19 호 :	망우 5 차및김포 1 차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.....	14
제 20 호 :	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열람.....	16

조 **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·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상 천 인

1980년 1월 19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1392 호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·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위임한사항"을 "위임한 사항 및 임상연구비지급"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지하철근부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조정수당 지급액 및 지급대상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하고, 외부직공무원의 조정수당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병원근무자: 월 200,000 원 (특진비준용액 180,000 원 포함)

2. 보진소근무자: 3월 월 200,000 원
3월 월 225,000 원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시정한다.

제3조(임상연구비) ①병원계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병원의 장급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임상연구비 지급액 범위내에서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임상연구보고서 제출, 지급방법 등은 국립의료원의 예에 준하여 시장의 따로 정한다.

별표 1을 삭제하고, 별표 2 및 별표 3을 "별표 1" "별표 2"로 한다.

부 **칙**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1일을 기하여 적용한다.

②(경과조치) 상원에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중 이 조례 제3조의 의단 임상연구비를 지급받지 않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정수당을 지급한다.

규 **칙**

서울특별시 남시직 의사 규칙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상 천 인

1980년 1월 19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839호

서울특별시 임시직
의사규칙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임시직의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잡급직의사규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2 제1항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및 보건소의 잡급직 의사 (이하 "의사"라한다)의 급료, 조정수당, 임상연구비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의사의 종류및 고용방법)

- ①의사는 수련의 (인턴, 엑스턴, 및 레지던트)와 일반의사 및 전문의로 구분한다.
- ②과장은 시장이 임용하고, 일반의는 당해 기관장이 임용한다.
- ③진료분야별 과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과목 표방허가를 받은 전문의 중에서 보한다.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사한 전문의로 보할수 있다.

제3조 (의사의 충원및 사직) ①수

련의의 충원은 서울대학교 산하병원과의 계약에 의한다.

②일반의사 및 전문의의 충원을 위하여 시장은 소속기관의 의사결원 및 결원에정인원을 추산하여 매년1회 이상 공개모집방식으로 충원 또는 임용후보자를 선정해 두어야 한다.

③전문의의 충원이 극히 어려운 특수진료과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원 충원시까지 비상근계약 의사를 활용 할 수 있다.

④일반의사 및 전문의가 사직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1개월전에 당해 기관장에게 예고하여야 한다.

제4조 (급료) ①수련의의 보수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.

②일반의사및 전문의의 급료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3급을류및 3급잡류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액및 호봉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이 경우 공무원유사경력 (정규직의사, 잡급직의사또는 전문직의사로서의 근무경력)은 그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제상하며, 공무원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 근무경력은 7할범위내에서 당해기관장이 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5조 (조정수당등) ①일반의사및 전문의의조정수당은 별표와 같이한다.

<p>1. 사업시행의 위치: 용산구 한강로 3가동 41 - 용산구저빙고동 84 외변지</p> <p>2. 사업의종류및 명칭: 잠수교 - 철도병원간 도로확장공사</p> <p>3. 사업규모: 도로확장: B=15+30-70m L=2,740m 하수노: 휴관 D=600-800m/m L=5,110m</p> <p>4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</p> <p>5. 착수 및 준공예정일: 인가일 - 1980.12.31</p> <p>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: 별첨생략</p> <p>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트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관계인주소, 성명: 별첨토지조사생략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◎서울특별시고시제 12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지정</p> <p>1. 당시 도시계획 재개발사업구역중 사업계획 결정된구역(지구)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을 도시재개발법 제 1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0. 1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</p>
--	--

가. 구역(지구)별 인가신청기간 지정내역

사업명칭	시행구역(지구)	위 치	시행면적	인가신청기간	비고(사업계획결정)
서울역-서대문제3구역재개발사업	서울역-서대문제3구역1,2지구	서대문구미군동 267 일대	7,895㎡	80.1.15 -82.1.14	전고시제 435 호 (79.11.22)
공평구역재개발사업	공평재개발구역제 1 지구-제 9 지구	종로구공평동 66 일대	97,498㎡	"	전고시제 533 호 (79.12.28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3 호

도시계획미판지구변경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미판지구를 도시계획법제 12 조와 건설부고시제 41

호('77.3.16)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및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
1980.1.

서울특별시

○ 미관지구 변경및 결정조서					
구분	종별	연장(㎡)	면적(㎡)	위치	비고
기정	제4종	2,450㎡	58,800㎡	반포동 산 46-1-서초동 788부력	도로 경지선부터 양측 12㎡
변경	제3종	2,450㎡	98,000㎡	"	양측 20㎡ 공원용지구간제외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영략)					
<p>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 호</p> <p>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및 결정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미관지구를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'79.12.10) 에 의거 다</p>			<p>음과 같이 결정및 변경하고 이를 고시 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/p> <p>1980. 1. 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	
○ 미관지구 결정및 변경조서					
구분	종별	연장(㎡)	면적(㎡)	위치	비고
신설	4	2,420	72,600	대동동-합정동 373 일대	양측 15㎡
"	4	2,200	60,000	우이동-상계교	"
"	4	880	26,400	도봉구 번동 455-창동 422	"
"	4	4,000	120,000	수유동 279-미아동구제간(삼양로)	"
"	4	500	15,000	방배동 113부력-방배동 152부력	"
기정	4-30	1,870	20,880	문배동-마포동(육천북계도로)	12㎡
변경	4-30	1,870	24,060	" (육천구간 530 위치조정)	15㎡
기정	4-55	4,100	98,400	방배동-상도동	양측 12㎡
변경	4-55	1,050	104,700	방배동-상도동. 방배동 151구획-사당동 708 (위치조정)	15㎡
기정	2-29	2,200	726,000	서초동-영동지구 48구획	12㎡
변경	2-29	2,200	88,000	" (위치조정)	20㎡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영략)				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5 호

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
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475 호 (79.11.17) 로 시설결정및 지적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겠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0. 1.21

서울특별시장

- 1)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5의 26의 1 필지
- 2) 사업의 종류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: 변전소)
- 3) 면적및 규모: 면적 5,127㎡ (1,550.9 명)

○ 노선조사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목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소로	2		8㎡	130㎡	미아동 867	미아동 833	
변경		1		10㎡				

별첨도면표시와감함 (도면생략)

4) 시행자주소, 성명: 영풍포구 여의도동 1-791

한국전력주식회사사장 김영준

5) 사업확수및 준공예정일

착수년월일: 80. 3

준공예정일: 80.11

6) 위치도면, 설계도서: 별첨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6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184 호 (79.5.4) 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1.21

서울특별시장
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7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 결정및시설 (공원,도로) 결정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) 및 시설 (공원, 도로)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건설부 고시제 463호</p> <p>가.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근거</p>		<p>(79.12.10) 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>1980. 1.22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	
구분	사업 (시설)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 설	일반의 주택지 조성사업	마포구성산동산 11-47 일대	3,478.8평	
	도로	마포구성산동산 11-47 부근	920.7평	단지내 6-8m
	어린이공원	마포구성산동산 11-47 일대	169.6평	단지내
<p>별첨도면표시와같음 (도면생략)</p>				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8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공용의청사) 실시계획인가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제 438호 (79.10.15) 로 시설결정및 지적승인 되었으며 동공고 제 382호 (79.11.14) 로 도시계획사업 (공유의청사) 에 따른 서류공람및 의견청취한 토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</p>		<p>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, 제 26조 및 건설부 고시제 463호 (79.12.1) 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>1980. 1.20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	

1) 사업시행지: 성동구중곡동 171-1

2) 사업의종류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 (공용외청사)

3) 사업시행면적: 129 평

4)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: 서울특별시 장(성동구청장)

5) 사업착수및 준공예정일

가. 착수년월일: 인가일로부터 일주일내

나. 준공예정년월일: 1980. 2. 28

6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

가. 소재지: 성동구중곡동 171-1

나. 지목, 지적: 대지 129평

다.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: 없음

7) 토지 또는 건물외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:

생략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9 호

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)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이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,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1. 22.

서울특별시 장

○ 시설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 설	전기공급설비	영등포구 구르동 125-66 부근	1,420 평 (429.55 평)	지하철 산도림변전소
신 설	"	관악구 방배동 505-2 부근	3,895 평 (1,205 평)	지하철 사당변전소
별첨도면표시와같음 (도면생략)				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2 호

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시행기간
지정에 따른공람공고

1. 당시 도시계획 재개발사업구역중
사업계획 결정된구역 (지구) 에 대

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기
간을 지정하였기 도시재개발법시행
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
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등의
소유자는 동기간내에 신청요건을
갖추어 인가신청을 하여주시기 바
라며, 동기간내에 인가신청이 없을
시는 토지등의 소유자이외의 시행
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수 있다.

가. 구역 (지구) 별 인가신청기간 지정내역

사업명칭	시행구역 (지구)	위 치	시행면적	인가신청 기간	비고 (사업 계획결정
서울역-서대문 역재개발사업지구	서대문 구제3구역 1, 2 동	서대문구마곡 동 267일대	7,895㎡	80.1.15- 82.1.14	건고시제 435 호 (79.11.22)
공영구역재 개발사업	공영재개발구역 제1지구-제19지구	종로구공평 동 66일대	97,493㎡	"	건고시제 533 호 (79.12.28)

2. 관계도서는 당시 건축국 재개발
1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

공람하고 있습니다.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5 호

도시계획사업 (일단의주택지조
성사업) 실시계획변경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270 호(79.6.
25) 및 동고시제 387호로 도시계획
사업 실시계획인가된 구기동 도로및
의교관공판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
서울특별시고시제 437 호(79.10.15)

에 의한 사업실시계획변경사유가 발
생하였기 본사업계획을 변경코자 도
시계획법 제25조및 동법제34조의
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
일반에게 공람코자 공고함.

2. 변경으로인한 수용대상재산의 소유자
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할것이나
미수령자에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함.

1980.1.18

서울특별시장

<p>0 사업계획서</p> <p>1. 사업명 : 도시계획사업 (구기동 외교관단지 조성사업)</p> <p>2. 사업시행지위치 : 구기동 158 번 지일대</p> <p>3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</p> <p>4. 사업시행기간 : 79.4-80.2.29</p> <p>5. 공고기간 : 80.1.18-80.1.31</p>	<p>6. 자원조사 : 동익사업비, 도시계획 종합계획, 시설비</p> <p>7. 사업규모 : 면적 : 12,605평 사업비 : 1,685,058 원</p> <p>8. 사용 또는 수용 할 재산의 소재지 : 별첨</p> <p>9. 토지 또는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</p>
---	---

전 발 조 서

순번	소재지		구 조	평 수	등급	소 유 자		비 고
	동	지 번				주 소	성 명	
1	구기동	126-3	철근콘크리트	지하 7.56평		구기동 126-3	최광복	
2	"	126-5	평 육 개	26.19"		구기동 126-5	이중성	
3	"	126-19	연외조세멘와즙	23.10"		" 126-19	강승만	
			지하 4.23"					

토 지 조 서

순번	소재지		지 목	평 수	등급	소 유 자		비 고
	동	지 번				주 소	성 명	
1	구기동	126-22	개	175 평		구기동 126-5	이중성	
2	"	126-19	"	202 평		" 126-19	강승만	
3	"	126-3	"	188 "		" 126-3	최광복	
4	"	125-1	"	50 "		창천동 72-37	고윤석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6 호

도시계획사업(시장) 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472 호 (78.9.13) 로 지적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3 호 (79.6.20) 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(시장)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및 동법 제 57 조 2

항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한다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, 시민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1. 19.

서울특별시장

<p>도시계획사업(시장)완료내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25-1외2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(시장)성내시장 3. 사업시행면적: 2,367㎡ 4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친호개발(주) 대표 오병희 5. 사업시행기간: 79.6.20-79.12.31 6. 준공도면: 생략 	<p>도시계획사업(시장)완료내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 강동구 오금동 397-2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(시장)석우시장 3. 사업시행면적: 2,268 4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4-24 석우상사대표강영숙 5. 사업시행기간: 79.6.20-79.12.31 6. 준공도면: 생략
<p>☞서울특별시공고제 17 호</p>	<p>☞서울특별시공고제 18 호</p>
<p>도시계획사업(시장)완료공고</p>	<p>도시계획사업(도로)완료공고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8 호 (79.5.26)로 지적공시 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3 호 (79.6.20)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(시장)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35조 및 동법 제 57조 2항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63호 (79.12.10)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, 시민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24 호 (79.12.20)로 도시계획사업(도로)시행허가된 도봉구 수유동 326-4 도로 포장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조 2항 및 제 8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 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케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<p>1980. 1. 19.</p>	<p>1980. 1. 21.</p>
<p>서울특별시장</p>	<p>서울특별시장</p>

수납 번호	물 전 지			과도평	청 산 금 채 납 액	남 부 자		비고
	동	지 번	평 수			주 소	성 명	
714	공농	644-7			167,396	창신동 336-50	김인순	
719	"	644-28			527,408	공농동 340-10	이재석	외1인
816	"	684-46			984,247		정명근	
820	"	690-2			221,178	양주군 구리읍 갈매리	109-20	한수
821	"	690-4			280,158	"	"	"
822	"	690-5			412,865	"	"	간선
338	"	517-48			2,128,755	면목동 72	이금봉	
541	"	587-6	102.8	29.6	3,906,548	금호동 2가 108-12	송문로	
209	"	502-1	27.2	8.8	1,406,204	이문동산 63-4	김광남	
693	"	621-8	104.8	2.4	456,847	신당동 304-27	임세영	
4	"	312-7	121.8	3.4	499,684	북동 122-6	정선희	
110	"	389-12	83.2	25.6	4,097,510	상왕십리 469	김극문	
414	"	566-32	60.8	8.7	1,621,088	중화농 301-5	정덕화	
764	"	661-22	69.7	0.5	95,703	화곡동 70-1	김동원	
646	"	609-3	316.4	0.4	63,988		이홍길	
72	"	380-38	12.6	4.9	560,295	북동 323-24	김재성	
74	"	380-44	30.5	0.5	75,670	북동 323-4	"	
786	"	683-7	35.2	0.1	20,207	석관동 220	김덕행	
656	"	609-19	45.4	2.9	464,481	"	"	
(김포분)				(강서구청)				
105	동촌	504-1			111,055	동촌동 365-76	박가수	
126	"	605-1			43,582	신수동 66-26	김광자	
135	"	534-4			201,367	북동 40	이재현	
158	화곡	993-4			1,232,964	신당동 305-26	김권향	
217	"	988-18			37,798	화곡동 361-1	이원기	
218	"	988-19			12,599	화곡동 361-1	이원기	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0호

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열람

- 1. 서울특별시 관내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,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 17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한다.
- 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 - 1) 154 반포변전소 부지
 - 가. 사업의 명칭: 전원개발사업
 - 나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: 중구

남대문로2가5

한국전력주식회사 김영준

다. 사업구역 위치: 강남구 신사동

392-1 일원

면적: 3,467.1㎡

(1,048.8평)

2) 154 압구정변전소 부지

가. 사업의 명칭: 전원개발사업

나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: 중구 남대문로2가5

한국전력주식회사 김영준

다. 사업구역 위치: 강남구 논현동 산 53-1

면적: 4,380㎡ (1,325평)

설침도면표시와감음(도면생략)함.